

##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MSDS 번호: AA00155-000000268

### Trimethyl amine 99 %

Data of issue: 2022-08-29

Revision date: 2020-01-16

Version: 3.0

##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### 가. 제품명

- Trimethyl amine 99 %

#####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자료없음  
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
#####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###### ○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(주)리가스  
- 주소 : 경영기획부  
- 전화번호 : 0429346900  
- 긴급 전화번호 : 0429346900

###### ○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회사명 : (주)리가스  
- 주소 : 경영기획부  
- 전화번호 : 0429346900  
- 긴급 전화번호 : 0429346900

#### 2. 유해성·위험성

#####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인화성 가스 : 구분1  
- 고압가스 : 액화가스  
- 급성 독성(경구) : 구분4  
- 급성 독성(흡입: 가스) : 구분4  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: 구분1  
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: 구분1  
- 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 : 구분3(호흡기 자극)  
- 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 : 구분2

#####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###### ○ 그림문자



###### ○ 신호어

- 위험

###### ○ 유해·위험 문구

- H220 극인화성 가스  
- H280 고압가스: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
- H302 삼키면 유해함  
-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 
-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
- H332 흡입하면 유해함  
- H335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
-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

###### ○ 예방조치문구

###### 1) 예방

- P210 열, 고온의 표면, 스파크,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. 금연

- P260 가스/미스트/증기/스프레이를(을) 흡입하지 마시오.
- P261 가스/미스트/증기/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.
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부위를 철저히 씻으십시오.
-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.
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.
- P280 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를(을) 착용하십시오.

**2) 대응**

- P301+P312 삼켰다면: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/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.
- P301+P330+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. 토하게 하지 마시오.
- P303+P361+P353 피부(또는 머리카락)에 묻으면: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.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/샤워하십시오 .
- P304+P340 흡입하면: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.
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: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P310 즉시 의료기관/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/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.
-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십시오.
- P321 응급처치(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,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,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로 이동, 먹었을 때 구토를 유발할지에 대하여 의료진의 조언을 구함)를 하십시오.
- P330 입을 씻어내시오.
-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십시오.
- P377 가스 누출 화재;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.
- P381 누출 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.

**3) 저장**

- P40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
- P403+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.
-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십시오.
- P410+P403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.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

**4) 폐기**

-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/용기를 폐기하십시오.

**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**

- 자료없음

**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**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트리메틸아민	메탄아민, N,N-다이메틸- ; N-트라이메틸아민 ;	75-50-3 / KE-11508	99%

**4. 응급조치 요령**

**가. 눈에 들어갔을 때**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십시오.

**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**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부는 재사용 전에 (충분히) 세탁하십시오
- 액화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에 접촉한 경우 미지근한 물로 해당 부위를 녹이시오.
- 액화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와 접촉시, 화상, 심각한 상해, 동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
**다. 흡입했을 때**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십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십시오.

**라. 먹었을 때**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####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###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####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분말소화제, 탄산가스, 일반 포말소화제, 분무
-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- 화재 진압 시 방화복, 소방용 구조헬멧, 소방용 안전화, 소방용 안전장갑,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.

####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고압가스: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
- 극인화성 가스
-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- 삼키면 유해함
-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

#### 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,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소방서에 알리고, 화재 위치와 유해한 특징을 알려주시오.
-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.

### 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####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.
-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
-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.
-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.

####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시오.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
####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다량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시오.

### 7. 취급 및 저장 방법

#### 가. 안전취급요령

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.
-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시오.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(증기, 액체, 고체)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,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-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의, 작업화를 사용한다.

#### 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오.
-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.
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손상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시오.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.

### 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#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##### ○ 국내노출기준

- [트리메틸아민] : TWA : 5 ppm, STEL : 15 ppm

- ACGIH노출기준
  - [트리메틸아민] : TWA 5 ppm(12 mg/m<sup>3</sup>) STEL 15 ppm (36 mg/m<sup>3</sup>)
- 생물학적 노출기준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
**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**

-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기를 권장함

- 다. 개인 보호구**
- 호흡기 보호
    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    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  - 눈 보호
    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   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.
  - 손 보호
   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.
  - 신체 보호
   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.

**9. 물리화학적 특성**

가. 외관	(CH <sub>3</sub> ) <sub>3</sub> N Trimethyl amine
- 성상	압축액화가스
- 색	무색
나. 냄새	암모니아 냄새, 비린 내, 자극성 냄새
다. 냄새역치	0.00021 ppm
라. pH	(강한 염기성)
마. 녹는점/어는점	-117 °C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3 °C
사. 인화점	(인화성 가스)
아. 증발 속도	(>1 (초산 부틸=1))
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	자료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11.6 / 2 %
카. 증기압	187 kPa (20°C)
타. 용해도	89 g/100ml (30°C)
파. 증기밀도	2
하. 비중	0.6 (액체)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0.2
너. 자연발화온도	190 °C
더. 분해온도	자료없음
러. 점도	자료없음
머. 분자량	59.1

**10. 안정성 및 반응성**

**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**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- 고압가스 포함 ;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.
-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.

**나. 피해야 할 조건**
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.
- 열, 불꽃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.

**다. 피해야 할 물질**

- 자료없음

**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**

- 자료없음

**11. 독성에 관한 정보****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**

- (호흡기)
  -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- (경구)
  - 삼키면 유해함
- (눈·피부)
  -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  -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

**나. 건강 유해성 정보**

- 급성 독성
  - \* 경구 독성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LD50 500 mg/kg Rat (HSDB)
  - \* 경피 독성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LD50 > 5000 mg/kg Rat (ECHA)
  - \* 흡입 독성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LC50 500~2500 ppm (NIER), LC50 4261 ppm/4hr Rat (10.3 mg/L/4H)(HSDB)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/자극성 실험결과 중간 자극이 발견됨(홍반지수2.9, 부종지수1.8 부분에서 8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자극성이 관찰됨)(ECHA)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/자극성 실험결과 자극성이 관찰됨(각막지수 2.5, (홍채지수1,결막지수2, 결막부종 2.4 14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자극성이 관찰됨))(ECHA)
- 호흡기 과민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자료없음
- 발암성
  - \*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  - \* IARC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  - \* OSHA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  - \* ACGIH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  - \* NTP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  - \* EU CLP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(OECD Guideline 471, GLP, 유사물질 CAS No.75-50-3), 시험관 내 포유류 염색체이상시험결과 대사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양성(OECD Guideline 473, GLP, 유사물질 CAS No.75-50-3), 포유류 유전자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(OECD Guideline 476, GLP)(ECHA)
- 생식독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랫드(암/수)를 이용한 생식독성시험결과 관찰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음 NOAEL=40 mg/kg/day(OECD Guideline 422, 유사번호 CAS No.75-50-3), 랫드(암/수)를 이용한 발달독성/생식독성 시험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음 NOAEL=40mg/kg bw/day(maternal toxicity, other guideline: OECD 422)(ECHA)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
  - [트리메틸아민] : 흡입독성시험 결과 발기, 혼수, 창백, 비정상적걸음걸이, 안검 하수, 몸 떨림, 두통을 일으킴 경피독성시험 결과 불규칙한 호흡, 무관심, 경련 걸음 걸이가 나타남 경구독성시험 결과 발기, 혼수상태, 창백 구부린 자세 비정상적인 걸음 걸이가 나타남 (ECHA)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
  - [트리메틸아민] : 랫드(암/수) 반복경구노출실험 결과 음식 소비, 총 단백질 농도 및 알부민 농도의 감소, 편평 상피 증식과 부종에 염증 변화 NOAEL=200mg/kg/일 (OECD TG 422, 유사물질 CAS No.75-50-3), 랫드를 흡입반복노출실험 결과 LOAEL = 0.025 mg/L air (ECHA)
- 흡인 유해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자료없음

- 고용노동부고시
  - \* 발암성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  - \* 생식세포 변이원성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  - \* 생식독성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### 가. 생태독성

- 어류
  - [트리메틸아민] : 자료없음
- 갑각류
  - [트리메틸아민] : EC50 139.95 mg/l 48 hr Daphnia magna(EU Directive 79/831/EEC, Annex V, part C, read-across CAS No.75-50-3) (ECHA)
- 조류
  - [트리메틸아민] : EC50 74.2 mg/l 96 hr Scenedesmus (NITE: IUCLID, 2000) EC50 150 mg/l 72 hr Scenedesmus subspicatus(DIN 38412, part 9, read-across CAS No.75-50-3) (ECHA)

### 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잔류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log Kow 0.16 (read-across CAS No. 75-50-3) (NITE: PHYSPROP Database, 2005/ECHA)
- 분해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자료없음

### 다. 생물 농축성

- 생물 농축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BCF < 1 (read-across CAS No. 75-50-3) (ECHA)
- 생분해성
  - [트리메틸아민] : BOD: 92 (%) (NITE: existing chemical safety inspections data) 92 % 14 day (readily biodegradable, OECD Guideline 301 C, read-across CAS No.75-50-3) (ECHA)

### 라. 토양 이동성

- [트리메틸아민] : 자료없음

### 마. 오존층 유해성

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
### 바. 기타 유해 영향

- [트리메틸아민] : 자료없음

## 13. 폐기 시 주의사항

### 가. 폐기방법

- 소각 처리할 것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,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할 것.

### 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##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### 가. 유엔번호 (UN No.)

- 1083

### 나. 유엔 적정 선정명

- TRIMETHYLAMINE, ANHYDROUS

### 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
- 2.1

**라. 용기등급(IMDG CODE/IATA DGR)**

- 해당없음

**마. 해양오염물질**

- 해당없음

**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**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D (Flammable gases)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U (Gases (flammable, toxic or corrosive))

**15. 법적 규제현황****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**

- **작업환경측정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**노출기준설정물질**
  - 해당됨 (트리메틸아민)
- **관리대상유해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**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**제조등금지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**허가대상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**PSM대상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됨 (인화성 가스)
- **허용기준설정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
**나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**

- **등록유예기간이 없는 화학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34
- **중점관리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**CMR(발암성, 생식세포변이원성, 생식독성) 및 CMR 우려 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
**다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- **유독물질**
  - 해당됨 (25% 이상 함유한 트리메틸아민)
- **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**사고대비물질**
  - 해당됨 (25% 이상 함유한 트리메틸아민)
- **제한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**허가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**금지물질**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
**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-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

**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.

**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**

- **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**

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EU 분류 정보
  - \* 확정분류 결과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H220,H280,H315,H318,H332,H335
- 미국 관리 정보
  - \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  - \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45.3599 kg 100 lb
  - \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  - \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  - \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  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로테르담 협약 물질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물질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  - [트리메틸아민] : 해당없음

## 16. 그 밖의 참고사항

### 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0호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CHA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### 나. 최초 작성일자

- 2022-08-29

### 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3 회, 2020-01-16

### 라. 기타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